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50호, 2019. 9. 11.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9월 10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3. 4. 10. ~ 4.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의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9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μm)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2. 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규격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y Inc.)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모델명
Garfilm EM6(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3.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가. 규격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이 각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小重合體, 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가 75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모델명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4. 홀로그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5.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두께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6. 태양광 모듈용 격자무늬 투명그리드 백시트(Back Sheet)

[별표 2]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
중국	1.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84
	2. 캉웨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캉웨이무역(Kanghui International Trade(Jiangsu)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20
	3.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4.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5.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6. 장수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7.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8.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9. 상하이(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6.98
	10. 그 밖의 공급자	36.98
인도	11.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12.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34.90
	13. 그 밖의 공급자	34.90

비고: 제 10 호 또는 제 13 호의 공급자가 각각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 11 호·제 12 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 10 호 또는 제 13 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의 공급자 또는 제 11 호·제 12 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